2026. 11. 15.
제 1748 호



법원 공보

법원행정처

법원공보

2026년 11월 15일(일요일)

제1748호

CONTENTS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535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 1537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 1539

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 1542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1544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546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1548

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 1552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 1554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1556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559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561

예규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1563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566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569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574

신법령 목록 1586

인사 1594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89호 2026. 11. 3. 공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2(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통지) 국가 또는 행정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소송수행자가 제4조제3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국가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검찰청의 장에게, 행정청에 대하여는 그 장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제25조의2(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통지) ----------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을 포함한다)----------.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90호 2026. 11. 3. 공포)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법 제12조에 따라 송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조치·이송·불처분·보호처분 결정과 보호처분의 변경·종료 결정을 검사에게 통지할 때에는 해당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한다.	제7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 ----------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② ---------- ---------- 공소청---------- --.
제8조(송치 및 이송의 방식) ① 법원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하거나 법 제37조제2항제1호·제46조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할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따른 송치의 경우에는 각각 같은 조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송부한다. ②·③ (생 략)	제8조(송치 및 이송의 방식) ① ---------- ---------- ---------- ----------공소청----------.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기록 등의 송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이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집행감독사건 기록을 포함한다)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제10조(기록 등의 송부) ---------- ---------- 공소청----------. 1. ~ 2. (현행과 같음)
제45조(불처분 결정) ① (생 략) ② 판사가 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불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위자가 수탁·유치기관에 수용 중이면 수탁·유치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송치받을 검찰청에 미리 서면, 전화, 팩스,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불처분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공소청---------- ----------.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91호 2026. 11. 3. 공포)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 ---------- ----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② 임시조치·이송·불처분·보호처분·보호처분의 변경·보호처분의 종료 결정을 검사에게 통지할 때에는 당해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한다.	② ---------- ---------- ---------- ---------- 공소청---------.
제7조(송치 및 이송의 방식) ① 법원이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법 제41조제1호에 의하여 검사에게 송치할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법 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송부한다.	제7조(송치 및 이송의 방식) ① ---------- ---------- ---------- ---------- ---------- ---------- ---------- ---------- ---------- --- 공소청----------.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기록등의 송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기록(집행감독사건 기록을 포함한다)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제9조(기록등의 송부) ---------- ---------- ---------- 공소청----------. 1. ~ 2. (현행과 같음)
제45조(불처분결정) ① (생 략)	제45조(불처분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판사가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불처분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 결정	② ---------- ---------- ----------

현 행	개 정 안
이 확정된 때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위자가 수탁·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때에는 수탁·유치기관의 장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송치받을 검찰청에 미리 서면, 전화 또는 팩스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 ---------- 공소청-- ---------- ----------.

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92호 2026. 11. 3. 공포)

소년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중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검찰청”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40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국선보조인) ① 국선보조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 한다. 1. 변호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제외한다) 또는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습중인 사법연수생 2. (생 략) ②·③ (생 략)	제19조의2(국선보조인) ① ----------.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검사에 대한 통지) 소년부 판사가 법 제38조제1항제2호, 법 제51조에 따라 이송결정을 한 때에는 이송받을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검사에 대한 통지) ----------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93호 2026. 11. 3. 공포)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신분증명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인감의 기록)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제출된 인감과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인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6조(인감의 기록)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신분증명서----------.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94호 2026. 11. 3. 공포)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전단 중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을 “여권, 운전면허증,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주민등록증등”을 “신분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① (생 략)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등의 사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42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② ---------- 여권, 운전면허증,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 ----- 신분증----------. ③·④ (현행과 같음)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95호 2026. 11. 3. 공포)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호 중 “검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공소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2조 본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제2항 단서, 제4항 전문 및 후문, 제5항 및 제6항 중 “검찰”을 각각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검찰로”를 “공소청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로부터”를 “공소청으로부터”로 한다.

제88조 후문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계속사건의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공탁당사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법원 또는 검찰이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5. (생 략)	제81조(용어의 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공소청”이라 한다)----------. 5. (현행과 같음)
제82조(공탁서 기재의 특칙) 제20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을 포함한다)과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82조(공탁서 기재의 특칙) ----------공소청----------. ----------.
제84조(형사공탁의 공고) ① (생 략) ②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3. (생 략)	제84조(형사공탁의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공소청---------- 3. (현행과 같음)
제85조(형사공탁 사실 통지) ① 공탁관은 제27조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을 전송받거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형사공탁 사실 통지) ① ---------- 공소청----------.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6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공탁물 수령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탁물 회수를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 또는 검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일인 증명서 발급·송부는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판결 선고 후 기록 송부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담당한다. 다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하는 사건 및 이미 확정되어 기록이 검찰로 인계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담당한다. ③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증거서류가 검찰로부터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공판검사에게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구를 받은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법원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피해자 인적사항이 제공되지 않거나 그 제공이 지체되는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검찰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송부되지 않은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제2항의 구분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송부를 담당하는 법원 또는 검찰에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 후문 및 제5항의 요청을 받은 법원 또는 검찰은 피공탁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6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 ① ---------- 공소청----------. ② ---------- 공소청으로 ---------- 공소청----------. ③ ---------- 공소청으로부터 ----------. ④ ---------- 공소청----------. ---------- 공소청----------. ⑤ ---------- 공소청----------. ⑥ ---------- 공소청----------.

현 행	개 정 안
제88조(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검찰은 군검찰로 본다.	제88조(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 ----------, 공소청----------.

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96호 2026. 11. 3. 공포)

집행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사무원의 채용등)” 을 “(사무원의 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무원은 법원 및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표 집행관이 채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사무원의 채용등) ① (생 략) ② 사무원은 법원 및 검찰청 9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표 집행관이 채용한다. ③ ~ ⑦ (생 략)	제21조(사무원의 채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원은 법원 및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표 집행관이 채용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97호 2026. 11. 3. 공포)

법무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호 중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으로 하고, “심문”을 “신문 또는 심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신고의무)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업무에 관하여 법원 또는 검찰청의 심문을 받은 때 3. · 4. (생 략)	제50조(신고의무) ----------. 1. (현행과 같음) 2. ----------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의 신문 또는 심문--------- 3. · 4. (현행과 같음)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98호 2026. 11. 3. 공포)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보존) ① 제64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할 때 제46조제1항제1호의 정보 중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정보를 등록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첨부정보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첨부정보의 등록·처리, 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소, 주민등록번호"로,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111조제1항 전단 중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을 "여권, 운전면허증,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주민등록증등"을 "신분증"으로 한다.

제163조제2항제3호 중 "경우에는"을 "경우(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보존) ① 제64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할 때 제46조제1항제1호의 정보 중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정보를 등록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첨부정보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첨부정보의 등록·처리, 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2조(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 (생 략)	제32조(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① ----------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부 또는 일부----------. ② (현행과 같음)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① 법 제51조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등의 사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① ---------- 여권, 운전면허증,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한다)----------. ---------- 신분증----------.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3조(관련 신청사건의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이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말한다.	제163조(관련 신청사건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현 행	개 정 안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공동저당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이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과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기소에 추가되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3. ---------- 경우(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99호 2026. 11. 3. 공포)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법원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 한함)의 수를 33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32명으로 한다.	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법원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 한함)의 수를 33명으로 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300호 2026. 11. 3. 공포)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검찰청”을 “수사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등록의무자·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23조(등록의무자·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수사기관----------. ④·⑤ (현행과 같음)

예규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80호 2026. 10. 29. 결재)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택당직근무제의 운영 등) ① 재택당직근무는 숙직근무 및 일직근무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② 재택당직근무제실시법원의 당직근무자는 1인 이상으로 한다.

③ 규칙 제8조에 따라 당직실을 설치하지 않는 기관의 당직자는 각급 기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한다.

제6조제1항 중 “전환하되, 최소한 22:00까지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를“전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직근무자는 18:00이후 전항의 요령에 따라 재택근무로 전환하되, 최소한 20:00까지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를“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일정시간 대기 후 전항의 요령에 따라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가 동일한 경우(일직근무 후 숙직근무를 하는 경우에 한함) 숙직근무자의 당직실 대기는 면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직실 대기근무 시간은 각급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정하되, 최소한 1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무인전자경비장치 조작카드 1매와 청사출입문 열쇠 1개를 인계하고”를 “보안점검 사항 및 보안점검표 인계 후”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최종퇴청예정자에게 보안점검 사항 및 보안점검표 인계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택당직근무제의 운영 등) ① 재택당직근무는 숙직근무에 한하여 실시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의 일직근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조(재택당직근무제의 운영 등) ① 재택당직근무는 숙직근무 및 일직근무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② 재택당직근무제실시법원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를 포함하여 2인 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기관의 장은 현원 등 제반실정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의 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재택당직근무제실시법원의 당직근무자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신 설〉	③ 규칙 제8조에 따라 당직실을 설치하지 않는 기관의 당직자는 각급 기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한다.
제6조(재택근무시간) ① 평일 숙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종료 후 당직실에서 문서접수 및 영장업무처리 등을 완료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하되, 최소한 22:00까지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제6조(재택근무시간) ① ---------- 전환하여야 한다.
② 토요일 및 공휴일의 일직근무자는 18:00이후 전항의 요령에 따라 재택근무로 전환하되, 최소한 20:00까지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② ----------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일정시간 대기 후 전항의 요령에 따라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가 동일한 경우(일직근무 후 숙직근무를 하는 경우에 한함) 숙직근무자의 당직실 대기는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직실 대기근무 시간은 각급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정하되, 최소한 1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재택근무자는 다음 날 08:00까지 출근하여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작동을 해제하고 잔무를 처리한 후 접수 또는 접수 보류된 문서, 당직근무일지 및 기타 당직용비품 등을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이 연속되는 연휴인 경우에는 당일 일직근무자와 인계·인수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최종퇴청자에의 인계 등) ① 당직근무자가 재택근무로 전환할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사내에 근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퇴청예정자에게 무인전자경비장치 조작카드 1매와 청사출입문 열쇠 1개를 인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다.	제7조(최종퇴청자에의 인계 등) ① ---------- ---------- ---------- ---------- ------ 보안점검 사항 및 보안점검표 인계 후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재택근무자의 임무) ① 근무자는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안사고 등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8조(재택근무자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최종퇴청예정자에게 보안점검 사항 및 보안점검표 인계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81호 2026. 11. 2. 결재)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호 양식, 제2-4호 양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1월 3일부터 시행하되,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계속사건의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전에 접수되어 공탁당사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9호 양식]

금전 공탁서(형사사건용)

<table>
<tr><td colspan="2">공 탁 번 호</td><td colspan="2">년 금 제 호</td><td colspan="2">년 월 일 신청</td><td>법령조항</td><td>민법487조</td></tr>
<tr><td rowspan="4">공탁자</td><td>성 명
(상호, 명칭)</td><td colspan="2"></td><td rowspan="4">피공탁자</td><td>성 명
(상호, 명칭)</td><td colspan="2"></td></tr>
<tr><td>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
(본점, 주사무소)</td><td colspan="2"></td><td>주 소
(본점, 주사무소)</td><td colspan="2"></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공 탁 금 액</td><td colspan="2">한글
숫자</td><td colspan="2">보 관 은 행</td><td colspan="2">은행 지점</td></tr>
<tr><td rowspan="2">형사사건</td><td>사건번호</td><td colspan="6">경찰서 년제 호
지방공소청 지청 년 형제 호
지방법원 지원 년 고단(합) 제 호</td></tr>
<tr><td>사건명</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공탁원인사실</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비고(첨부서류등)</td><td colspan="6">□ 계좌납입신청
□ 공탁통지 우편료 원</td></tr>
<tr><td colspan="2">반대급부 내용 등</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8">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td></tr>
<tr><td colspan="8">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td></tr>
<tr><td colspan="8">(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td></tr>
</table>

※ 1. **공탁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공탁자는 ①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②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3. 공탁금 납입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출력한) 공탁서 원본을 형사사건이 최종 계류 중인 경찰서나 공소청 또는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 공탁금을 납입할 때 우편료(피공탁자 수 × 1회 발송)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해당 공탁사건번호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예납할 수 없습니다).**

5.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6.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2-4호 양식]

금전 공탁통지서(형사사건용)

<table>
<tr><td colspan="2">공 탁 번 호</td><td colspan="2">년 금 제 호</td><td colspan="2">년 월 일 신청</td><td>법령조항</td><td></td></tr>
<tr><td rowspan="2">공탁자</td><td>성 명
(상호, 명칭)</td><td colspan="2"></td><td rowspan="2">피공탁자</td><td>성 명
(상호, 명칭)</td><td colspan="2"></td></tr>
<tr><td>주 소
(본점, 주사무소)</td><td colspan="2"></td><td>주 소
(본점, 주사무소)</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 rowspan="2">공 탁 금 액</td><td colspan="2">한글</td><td colspan="2" rowspan="2">보 관 은 행</td><td colspan="2" rowspan="2">은행 지점</td></tr>
<tr><td colspan="2">숫자</td></tr>
<tr><td rowspan="2">형사사건</td><td>사건번호</td><td colspan="6">경찰서 년제 호
지방공소청 지청 년 형제 호
지방법원 지원 년 고단(합) 제 호</td></tr>
<tr><td>사건명</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공 탁 원 인
사 실</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반대급부 내용 등</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8">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대리인 주소
공탁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td></tr>
</table>

1. 위 공탁금이 년 월 일 납입되었으므로 [별지] 안내문의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우리 법원 공탁소에 출석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이체 가능한 은행을 확인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공탁자는 ①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②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공탁금은 그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소멸시효 중단 등)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5.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때에 청구서에 이의유보 사유(예컨대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함” 등)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후에 다른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공탁통지서는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7. 사건 내용은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통지서 하단에 발급확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신청된 사건이므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공탁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송

법원 지원 공탁관 (인)
(문의 전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82호 2026. 11. 2. 결재)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 양식, 별지 제1-6호 양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1월 3일부터 시행하되,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계속사건의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전에 접수되어 공탁당사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별지 제1-5호 양식]

금전 공탁서(형사사건용)

1. 공탁신청 및 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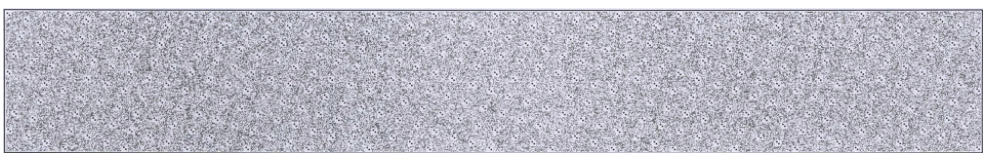
<table>
<tr><td colspan="2">공 탁 번 호</td><td colspan="2">년 금 제 호</td><td colspan="2">년 월 일 신청</td><td>법령조항</td><td></td></tr>
<tr><td rowspan="4">공탁자</td><td>성 명
(상호, 명칭)</td><td colspan="2"></td><td rowspan="4">피공탁자</td><td>성 명
(상호, 명칭)</td><td colspan="2"></td></tr>
<tr><td>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
(본점, 주사무소)</td><td colspan="2"></td><td>주 소
(본점, 주사무소)</td><td colspan="2"></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공 탁 금 액</td><td colspan="2">한글
숫자</td><td colspan="2">보 관 은 행</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형사사건</td><td>사건번호</td><td colspan="6"></td></tr>
<tr><td>사건명</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공탁원인사실</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비고(첨부서류등)</td><td colspan="6">☑ 계좌납입신청</td></tr>
<tr><td colspan="8">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성명</td></tr>
<tr><td colspan="8">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td></tr>
</table>

※공탁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공탁자는 ①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②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전자공탁사이트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 발행일



2. 공탁금 납입증명

법원명 : 공탁번호 : 납입일자 : 납입금액 : 보관은행 :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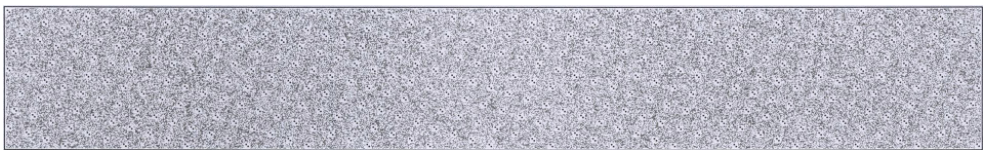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유의사항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공탁금 납입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출력한) 공탁서 원본을 형사사건이 최종 계류 중인 경찰서나 공소청 또는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 공탁금을 납입할 때 우편료(피공탁자 수 x 1회 발송)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해당 공탁사건번호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예납할 수 없습니다.)
4.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5.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전자공탁사이트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 발행일



[별지 제1-6호 양식]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1. 공탁신청 및 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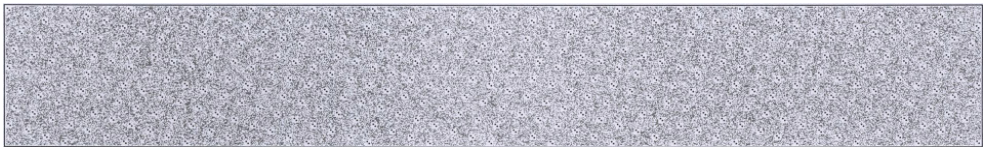
<table>
<tr><td colspan="2">공 탁 번 호</td><td>년 금 제 호</td><td colspan="2">년 월 일 신청</td><td>법령조항</td><td>공탁법 제5조의2</td></tr>
<tr><td rowspan="4">공탁자</td><td>성 명
(상호, 명칭)</td><td></td><td rowspan="4">피공탁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r>
<tr><td>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td><td></td><td rowspan="2">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td><td colspan="2"></td></tr>
<tr><td>주 소
(본점, 주사무소)</td><td></td><td colspan="2"></td></tr>
<tr><td>전화번호</td><td></td><td>공소청의
명칭과
사건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공 탁 금 액</td><td>한글
숫자</td><td colspan="2">보 관 은 행</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공탁원인사실</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비고(첨부서류등)</td><td colspan="5">☑ 계좌납입신청</td></tr>
<tr><td colspan="7">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성명</td></tr>
<tr><td colspan="7">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td></tr>
</table>

※공탁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공탁자는 ①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②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전자공탁사이트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 발행일



2. 공탁금 납입증명

법원명 : 공탁번호 : 납입일자 : 납입금액 : 보관은행 :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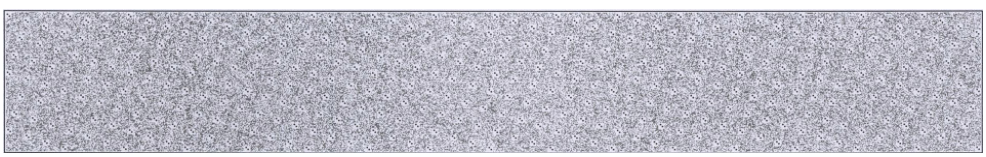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유의사항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공탁금 납입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출력한) 공탁서 원본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4.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 피공탁자란의 성명은 공소장·조서·진술서·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 가명 포함)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일 사건에 피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 가명 포함)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성명란: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홍길동” 이 기재된 경우 “홍길동”을, “홍○동”이 기재된 경우 “홍○동”을, “홍길동(가명)” 이 기재된 경우에 “홍길동(가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공탁원인사실란: ① 피해발생시점, 피해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전자공탁사이트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 발행일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83호 2026. 11. 2. 결재)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공소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제294조의5제1항”을 각각 “제294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문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양식부터 별지 제5호 양식까지, 별지 제9호 양식, 별지 제15호 양식, 별지 제16호 양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1월 3일부터 시행하되,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계속사건의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전에 접수되어 공탁당사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양식]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table>
<tr><td colspan="2">공 탁 번 호</td><td>년 금 제 호</td><td colspan="2">년 월 일 신청</td><td>법령조항</td><td>공탁법 제5조의2</td></tr>
<tr><td rowspan="4">공탁자</td><td>성 명
(상호, 명칭)</td><td></td><td rowspan="4">피공탁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r>
<tr><td>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td><td></td><td rowspan="2">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td><td colspan="2"></td></tr>
<tr><td>주 소
(본점, 주사무소)</td><td></td><td colspan="2"></td></tr>
<tr><td>전화번호</td><td></td><td>공소청의 명칭과 사건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공 탁 금 액</td><td>한글
숫자</td><td colspan="2">보 관 은 행</td><td colspan="2">은행 지점</td></tr>
<tr><td colspan="2">공탁원인사실</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비고(첨부서류등)</td><td colspan="5">□ 계좌납입신청</td></tr>
<tr><td colspan="7">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td></tr>
<tr><td colspan="7">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td></tr>
<tr><td colspan="7">(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td></tr>
</table>

※ 공탁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공탁자는 ①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②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전공탁서(형사공탁) 작성안내(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2. 공탁금 납입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 공탁서 원본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4.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 피공탁자란의 성명은 공소장·조서·진술서·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 가명 포함)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일 사건에 피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 가명 포함)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성명란 :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홍길동” 이 기재된 경우 “홍길동”을, “홍○동”이 기재된 경우 “홍○동”을, “홍길동(가명)” 이 기재된 경우에 “홍길동(가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공탁원인사실란 : ① 피해발생시점, 피해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공탁자는 0000. 0. 0. 00:00경 O시 OO구 OO로 O길 O, OO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

[별지 제2호 양식]

○ ○ 법 원
형사공탁 공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공탁법 제5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 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탁소 및 공탁번호

2. 공탁신청 연월일

3. 공탁물

4. 형사사건번호

5. 공소청사건번호

6. 피공탁자

7. 공탁물 출급 ·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와 관련된 사항

가. 피공탁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증명서)가 공탁소에 발급·송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규칙 제86조 제2항의 구분에 따른 법원 또는 공소청에 증명서의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86조 제5항). 증명서 발급·송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원·공소청 또는 공탁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탁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후 출급할 수 있습니다.

다. 피공탁자는 해당 공탁소에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를 제출할 경우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고, 우편으로 이를 제출할 경우에는 회수동의서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에 서명한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증 첨부).

20 . . .

○○ 법원 공탁관 ○○○

[연락처 : ○○○-○○○○(○○법원 공탁계)]

[별지 제3호 양식]

○ ○ 법 원
형사공탁 정정공고

공탁소 및 공탁번호

이 사건의 형사공탁 공고문을 아래 정정사항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아 래 -

정정사항

20 . . .

○○ 법원 공탁관 ○○○

[연락처 : ○○○-○○○○(○○법원 공탁계)]

※ 정정 전 공고문은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의'형사공탁 공고'에서 관련사건번호(법원사건번호, 공소청사건번호 등)로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양식]

형사공탁사실통지서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공탁신청연월일		
	공탁물		
	관련사건	법원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청사건번호	
공탁당사자 정보	공탁자		
	피공탁자		
첨부서면의 명칭			
문서확인번호			

공탁규칙 제85조제1항에 따라 형사공탁사실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법원 공탁관 ○○○ (직인)

[연락처 : ○○○-○○○○(○○법원 공탁계)]

1. 위 통지서는 공탁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통지로서 통지서 기재 공탁금액과 공탁서상 공탁금액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2. 피공탁자가 공탁금액 확인을 원하는 경우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공탁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서도 공탁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 양식]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서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공탁신청연월일		
	공탁물		
	관련사건	법원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청사건번호	
공탁당사자 정보	공탁자		
	피공탁자		
정정 사항			
문서확인번호			

위 정정사항과 같이 형사공탁사실통지서 기재사항이
정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법원 공탁관 ○○○ (직인)

[연락처 : ○○○-○○○○(○○법원 공탁계)]

[별지 제9호 양식] 재판양식 B4971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서

청 구 인	성 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팩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본인 □피해자 대리인 □피해자 포괄승계인 □피해자 변호사 □기타( )		

형사본안사건	사건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피해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공탁사건정보	공탁소 및 공탁번호	지방법원 금제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법원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위 공탁사건정보 기재 피공탁자에 대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송 부 일 시	20 . . . :	송 부 방 법	
비고(증명서 발급불가사유 등)		고 지 일 시	20 . . .

1. 형사본안사건이란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2. 해당 법원에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이고 법원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건의 경우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가명처리되고 인적사항이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되어 조서 등을 통해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건
   나. 판결이 확정되어 공소청에 기록이 인계된 사건

[별지 제15호 양식] 전산양식 B2128

○ ○ 법 원
의 견 조 회 서

사 건 20 고단
피 고 인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금전공탁에 대하여 피공탁자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피해자등"이라 합니다)의 의견을 확인하여 송달일로부터 5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판 사 ○○○ ㊞

의 견 회 신 서

○○법원 ○○재판부 귀하

다음과 같이 피해자등의 의사를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 공탁금 수령(예정)
☐ 공탁금 수령 거부(예정)
☐ 이미 공탁소에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공탁물 수령거절의사 통고서 제출 완료
☐ 기타[미정, 의견제출 거부 등]
☐ 첨부문서와 같음

20 . . .

공소청 검사 ○○○ (또는 피해자 변호사 ○○○) ㊞

[별지 제16호 양식] 전산양식 B2129

○ ○ 법 원
의견제출 고지·통지 보고서

사 건 20 고단

고지·통지 한 사항 (예시) 피고인의 공탁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고지·통지 받은 사람 (예시) 피해자 ○○○

고지·통지 연월일시

고지·통지 방법 (예시) 대상인과 전화통화

고지·통지 결과 (예시) 공탁금 수령(예정)

또는 공탁금 수령 거부(예정)

또는 이미 공탁소에 공탁물 회수동의서·공탁물 수령거절의사 통고서 제출 완료

또는 기타[미정, 의견제출 거부 등]

또는 첨부문서와 같음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첨 부]

20 . . .

법원사무관 ○ ○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형사공탁 공고) ① 공탁관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형사공탁 공고)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5. ----------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공소청"이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형사공탁사실의 통지 등) ① 공탁관은 공탁물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4호 양식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피공탁자별로 작성하여 규칙 제85조제1항의 법원 및 검찰에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통지서 사본은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제9조(형사공탁사실의 통지 등) ① ---------- 공소청----------.
1.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공탁물, 공탁 연월일	1. ---------- 공소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 ①「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1항 본문,「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자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별지 제15호 양식의 의견조회서(의견회신서)를 교부 또는 송부한다.	제9조의2(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 ① ---------- 제294조의6제1항 ----------.
②「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1항 본문,「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라 피	② ---------- 제294조의6제1항 ----------

현 행	개 정 안
해자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별지 제16호 양식의 의견제출 고지·통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동일인 증명서 발급 등) ① (생 략)	제11조(동일인 증명서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발급담당자는 제13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하고 해당 형사사건이 상소되어 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기 전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되어 사건기록이 검찰에 인계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 공소청----------.
제13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 ①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송부되지 않은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거나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규칙 제86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전화 등 간이한 방법으로 동일인 증명서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 ① ---------- 공소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동일인 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 ① (생 략)	제16조(동일인 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가 송부된 경우 공탁관은 제1항의 방법 및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 위·변조방지바코드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② 공소청----------.

신법령 목록 (2026. 10. 16. ~ 2026. 10. 31.)

법 률

법률제22073호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21343	2026. 10. 20.	5
법률제22074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6
법률제22075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7
법률제220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8
법률제22077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	〃	10
법률제22078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11
법률제22079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2
법률제22080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3
법률제2208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4
법률제22082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5
법률제22083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	〃	16
법률제22084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	〃	〃	17
법률제220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8
법률제2208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21
법률제2208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	〃	22
법률제22088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24
법률제22089호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28
법률제2209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9

법률제22091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1343	2026. 10. 20.	31
법률제22092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	〃	35
법률제22093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	〃	36
법률제22094호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	〃	〃	37
법률제22095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8
법률제2209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	〃	39
법률제22097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	〃	42
법률제2209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4
법률제22099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7
법률제22100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49
법률제22101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	〃	50
법률제22102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	〃	52
법률제22103호	예방접종관리법	〃	〃	55
법률제22104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70
법률제22105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	〃	79
법률제22106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	〃	83
법률제22107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84
법률제22108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	〃	88
법률제22109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0
법률제22110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92
법률제22111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	〃	93
법률제22112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94
법률제22113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	〃	95
법률제2211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21348	2026. 10. 27.	4
법률제22115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

법률제22116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1348	2026. 10. 27.	10
법률제22117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	〃	11
법률제22118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3
법률제22119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24
법률제22120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	〃	36
법률제22121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8
법률제2212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	〃	42
법률제22123호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	〃	〃	47
법률제22124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	〃	49
법률제22125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0
법률제22126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	〃	53
법률제22127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6
법률제22128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	〃	57
법률제22129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	〃	58
법률제22130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	60
법률제22131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7
법률제22132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	〃	68
법률제22133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71
법률제22134호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	73
법률제22135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	〃	79
법률제22103호	예방접종관리법 중 정정	21351	2026. 10. 30.	4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6762호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343	2026. 10. 20.	97
대통령령제36763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2
대통령령제36764호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	108
대통령령제36765호	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령	〃	〃	110
대통령령제36766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112
대통령령제36767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13
대통령령제3676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8
대통령령제3676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3
대통령령제36770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8
대통령령제36771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131
대통령령제3677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4
대통령령제3677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5
대통령령제36774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7
대통령령제36775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9
대통령령제36776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0
대통령령제36777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4
대통령령제36778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9
대통령령제36779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0

대통령령제36780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1343	2026. 10. 20.	152
대통령령제36781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7
대통령령제3678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344 (별권1)	2026. 10. 21.	2
대통령령제36652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중 정정	21345	2026. 10. 22.	4
대통령령제36783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1348	2026. 10. 27.	81
대통령령제36784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82
대통령령제3678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4
대통령령제36786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8
대통령령제36787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	〃	89
대통령령제36788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91
대통령령제36789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4
대통령령제36790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5
대통령령제36791호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03
대통령령제36792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	〃	108
대통령령제36793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1
대통령령제36794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5
대통령령제36795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7
대통령령제3679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8

총리령

총리령제216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343	2026. 10. 20.	159

부 령

국방부령제1233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21341	2026. 10. 16.	4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63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농림축산식품부령제796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
교육부령제395호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	21342	2026. 10. 19.	3
국가보훈부령제77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
법무부령제1154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18
행정안전부령제653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	〃	19
교육부령제394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21343	2026. 10. 20.	160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6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64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2
산업통상부령제2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4
해양수산부령제832호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84
행정안전부령제65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7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345	2026. 10. 22.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77호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
농림축산식품부령제797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0
해양수산부령제83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0

산업통상부령제24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345	2026. 10. 22.	23
법무부령제117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346	2026. 10. 23.	4
법무부령제1173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외교부령제167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농림축산식품부령제798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347	2026. 10. 26.	4
성평등가족부령제18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
행정안전부령제63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19
국방부령제1234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348	2026. 10. 27.	120
국토교통부령제163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1
보건복지부령제120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2
국방부령제1235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350	2026. 10. 29.	4
문화체육관광부령제65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
문화체육관광부령제651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
법무부령제1174호	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	21351	2026. 10. 30.	5
보건복지부령제1206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인사

인사발령 법 제160호 | 2026. 10. 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은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10. 30.부터 2027. 2. 19.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성인혜	2026. 10. 24.부터 2026. 12. 18.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신임법관연수 판사 (사법연수원)	김승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10. 6.부터 2027. 1. 31.까지 휴직을 명함

인사발령 법 제161호 | 2026. 10. 8.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권기만	2026. 10. 13.부터 2026. 10. 16.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경력별 연수 V-1) 피교육을 명함
	〃	소병진	〃
	〃	송중호	〃
	〃	엄기표	〃
	〃	이현석	〃
	〃	임은하	〃
	〃	장성진	〃
	〃	정인재	〃
	〃	정재욱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세용	〃
	〃	최욱진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희석	〃
	〃	김동현(金東鉉, 730922)	〃
	〃	김주석	〃
	〃	김창현	〃
	〃	김한성	〃
	〃	석준협	〃
	〃	손승온	〃
	〃	송승우	〃
	〃	이정형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규연	〃
	〃	허선아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경	2026. 10. 13.부터 2026. 10. 16.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경력별 연수 V-1) 피교육을 명함
	〃	김진영	〃
	〃	이동식	〃
	〃	이상원	〃
	〃	이원중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영환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송현경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	황순현	〃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매경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영광	〃
	대전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용찬	〃
	〃	나경선	〃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상윤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성경희	〃
	〃	이주영	〃
	〃	장래아	〃
	〃	정석원	〃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강경숙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은주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남해광	〃
	〃	신한미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	김성흠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호춘	〃
	〃	유재현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옥곤	2026. 10. 13.부터 2026. 10. 16.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경력별 연수 V-1) 피교육을 명함
	〃	민지현	〃
	〃	방웅환	〃
	〃	성언주	〃
	〃	이준영	〃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원근	〃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진아	〃
	특허법원 수석판사	정택수	〃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 신	2026. 10. 13.부터 2026. 10. 16.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경력별 연수 V-1) 피교육을 명함

인사발령 법 제162호 | 2026. 10. 8.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달기	2026. 10. 26.부터 2026. 11. 20.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인사발령 법 제163호 | 2026. 10. 16.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세현	2026년도 법정운영기술 개선연구 세미나(2026. 10. 19.) 피교육을 명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부장판사)	김용현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소민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김효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동희	〃
	〃	김은경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박병민	〃
나.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김선아	2026년도 법정운영기술 개선연구 세미나(2026. 10. 19.) 피교육을 명함
다. 고등법원 판사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철순	2026년도 법정운영기술 개선연구 세미나(2026. 10. 19.) 피교육을 명함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태현	2026년도 법정운영기술 개선연구 세미나(2026. 10. 19.) 피교육을 명함
	〃	박봄빛누리	〃
	〃	정희영	〃
	〃	진희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보미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노형미	〃

인사발령 법 제164호 | 2026. 10. 19.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호봉재획정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한	17호봉을 급함.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함
(2026. 11. 1. 자)			

인사발령 법 제165호 | 2026. 10. 19.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미경	2026. 10. 20.부터 2026. 10. 23.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경력별 연수 V-2) 피교육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전보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안희길	〃
	〃	임대호	〃
	〃	장성훈	〃
	〃	정영훈	〃
	〃	최종진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강동원	〃
	〃	정동혁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강우찬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강재원	〃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양민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우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현(金東鉉, 750103)	〃
	〃	박희근	〃
	〃	서보민	〃
	〃	장윤선	〃
	〃	조용래	〃
	〃	주채광	〃
	〃	하헌우	〃
	〃	한정석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두례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영훈	2026. 10. 20.부터 2026. 10. 23.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경력별 연수 V-2) 피교육을 명함
	〃	오병희	〃
	〃	이종엽	〃
	〃	장용범	〃
	〃	정덕수	〃
	〃	정용석	〃
	〃	정찬우	〃
	〃	지귀연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성균	〃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경수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석수	〃
	〃	김선용	〃
	〃	박진수	〃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성원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홍순욱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김정아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강길연	〃
	〃	신혜영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경희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노종찬	〃
	〃	주경태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채정선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혜선	2026. 10. 20.부터 2026. 10. 23.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경력별 연수 V-2) 피교육을 명함
	〃	오영상	〃
	〃	원종찬	〃
	〃	최은정	〃
	대구고등법원 판사	정성욱	〃
	광주고등법원 판사	박정훈	〃
	〃	박현수	〃
	특허법원 판사	우성엽	〃

인사발령 법 제166호 | 2026. 10. 19.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심형섭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11. 1.부터 2026. 11. 30.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재익	2026. 11. 8.부터 2027. 4. 7.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문보경	2026. 11. 1.부터 2027. 4. 30.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나. 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민한기	2026. 11. 24.부터 2027. 2. 2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우승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11. 2.부터 2027.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조진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11. 2.부터 2027. 8. 18.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규은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11. 5.부터 2027. 5. 4.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학인	2026. 11. 13.부터 2027. 2. 19.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허인성	2026. 11. 14.부터 2027. 2. 19.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2.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원철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26. 11. 22. 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11. 22.부터 2027. 2. 20.까지 휴직을 명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손화정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2026. 11. 25. 자)
나.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차윤제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6. 11. 28. 자)
	대전지방법원 판사	신은경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6. 11. 21. 자)
	대구지방법원 판사	유진홍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6. 11. 1. 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정지은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에 보함 (2026. 11. 20. 자)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소연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6. 11. 30. 자)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박미영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에 보함 (2026. 11. 23. 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11. 23.부터 2027. 2. 19.까지 휴직을 명함
	〃	박아름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에 보함 (2026. 11. 3. 자)

인사발령 법 제167호 | 2026. 10. 23.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규홍	2026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Ⅱ(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2026. 10. 26.) 피교육을 명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건배	2026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Ⅱ(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2026. 10. 26.) 피교육을 명함
	〃	이창열	〃
	〃	임대호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남준우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연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우인선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희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주관	〃
	〃	김효진	〃
	〃	이탁순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배구민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김효연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남해인	〃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양우현	2026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Ⅱ(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2026. 10. 26.) 피교육을 명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유경	2026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Ⅱ(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2026. 10. 26.) 피교육을 명함
	〃	이준승	〃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제민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정재용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최정윤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박예지	〃
	인천가정법원 판사	조수연	〃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성대	〃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하림	〃
	〃	윤지수	〃

인사발령 법 제168호 | 2026. 10. 26.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구회근	2026. 11. 2.부터 2026. 11. 27.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은아	2026. 11. 16.부터 2026. 12. 11.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동혁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우	2026. 11. 30.부터 2026. 12. 27.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균	2026. 11. 2.부터 2026. 12. 1.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배용준	2026. 11. 16.부터 2026. 12. 11.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양진수	2026. 11. 23.부터 2026. 12. 20.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태웅	2026. 11. 27.부터 2026. 12. 2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인사발령 법 제169호 | 2026. 10. 28.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정기승급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완수	16호봉을 급함
	〃	이정엽	〃
	〃	박정우	15호봉을 급함
	〃	정수영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전경훈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현정	14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홍관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애란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세욱	13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정은영	12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보람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박 민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영은	10호봉을 급함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원익선	17호봉을 급함
	수원고등법원 판사	나 청	15호봉을 급함
	〃	서정희	12호봉을 급함
	다.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정세영	9호봉을 급함
	대구고등법원 판사	박건협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대전고등법원 판사	신예슬	8호봉을 급함
라. 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윤봉학	12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승훈	11호봉을 급함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범진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이강호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김연수	〃
	신임법관연수 판사	최누리샘	〃
	(사법연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아영	9호봉을 급함
	서울행정법원 판사	강상우	〃
	인천지방법원 판사	박신영	〃
	수원회생법원 판사	신동욱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차유나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우영식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가영	8호봉을 급함
	〃	이원석	〃
	서울행정법원 판사	정종인	〃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선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박지상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조혜정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미리	〃
	수원지방법원 판사	홍연경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장준원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대구지방법원 판사	나혜선	8호봉을 급함
	〃	안성규	〃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부성	〃
	창원지방법원 판사	홍대훈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원도연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승현	7호봉을 급함
	인천가정법원 판사	조수연	〃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하림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김소영	〃
	청주지방법원 판사	박세라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유영	6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한은주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배현탁	5호봉을 급함
	〃	신주영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유정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나유진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유지희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은영	〃
	신임법관연수 판사 (사법연수원)	박재형	〃
	〃	정상진	〃
	〃	황창연	〃
	〃	송윤서	4호봉을 급함
	〃	이동명	〃
	신임법관연수 판사 (사법연수원)	이창민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신임법관연수 판사 (사법연수원)	임채린	4호봉을 급함
	〃	정재훈	〃
	〃	조현지	〃
	〃	주우진	〃

2. 호봉재획정

가. 지방법원 판사

신임법관연수 판사 (사법연수원)	류혜비	4호봉을 급함.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함

(2026. 11. 1. 자)

3. 발령취소

가. 인사발령 법 제50호(2025. 3. 1. 자) 중 1. 정기승급란의 "사. 지방법원 판사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소영 6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취소함

나. 인사발령 법 제50호(2025. 3. 1. 자) 중 1. 정기승급란의 "사.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조수연 6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취소함

4. 발령정정

가. 인사발령 법 제10호(2025. 2. 1. 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소영 6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나. 인사발령 법 제10호(2025. 2. 1. 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라.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조수연 6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인사발령 법 제170호 | 2026. 10. 29.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명선아	2026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Ⅲ(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2026. 10. 30.) 피교육을 명함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노연주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홍관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이민구	〃
	〃	장원석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노호성	〃
	〃	전진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신정민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박병민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한혜윤	〃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부산고등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재욱	2026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Ⅲ(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2026. 10. 30.) 피교육을 명함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동주	〃
다. 고등법원 판사			
	특허법원 판사	임현화	2026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Ⅲ(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2026. 10. 30.) 피교육을 명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의담	2026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Ⅲ(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2026. 10. 30.) 피교육을 명함
	〃	김지영	〃
	〃	이희성	〃
	서울행정법원 판사	유영화	〃
	〃	윤서진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초하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권혁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윤소희	〃
	인천지방법원 판사	박신영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기현	〃
	〃	선우인	〃
	창원지방법원 판사	박지연	〃

인사발령 법 제171호 | 2026. 10. 29.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장			
	광주회생법원장	김성주	2026년도 기본법률총서(지연손해금) 연계 법관연수(2026. 10. 30.) 피교육을 명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곽형섭	2026년도 기본법률총서(지연손해금) 연계 법관연수(2026. 10. 30.) 피교육을 명함
	〃	김혜진	〃
	〃	류창성	〃
	〃	박정우	〃
	〃	안동철	〃
	〃	엄 철	〃
	〃	최보원	〃
	〃	최영은	〃
	〃	최해일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강동원	〃
	〃	안복열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강우찬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영남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범준	〃
	〃	최복규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희근	〃
	〃	석준협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석	〃
	〃	이관형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정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남신향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순남	2026년도 기본법률총서(지연손해금) 연계 법관연수(2026. 10. 30.) 피교육을 명함
	〃	서희경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송현경	〃
	〃	이동호	〃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윤현규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김정아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권현영	〃
	〃	김광진	〃
	〃	김국현	〃
	〃	김미경	〃
	〃	김유진	〃
	〃	김희진	〃
	〃	박건창	〃
	〃	박남천	〃
	〃	반효림	〃
	〃	이정권	〃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양우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세현	〃
	〃	이근수	〃
	〃	이탁순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배구민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신동헌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김수정	〃
	〃	이혜림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정승연	2026년도 기본법률총서(지연손해금) 연계 법관연수(2026. 10. 30.) 피교육을 명함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부장판사	박세영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덕	〃
	〃	이영광	〃
	〃	홍은아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황여진	〃
	대전회생법원 부장판사	나경선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류봉근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강건우	〃
	〃	태지영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장판사	임윤한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장래아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도정원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부장판사)	김용현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장	김정일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권순향	〃
	〃	김용환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윤희	〃
	〃	김지철	〃
	〃	이효신	〃
	〃	주성화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하성우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박설아	2026년도 기본법률총서(지연손해금) 연계 법관연수(2026. 10. 30.) 피교육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김병주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재욱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진	〃
	〃	김은엽	〃
	〃	손광진	〃
	〃	정현희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남일	〃
	〃	이혜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이지웅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정현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송현	〃
	〃	김일수	〃
	〃	김종석	〃
	〃	김호석	〃
	〃	연선주	〃
	〃	이정호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조재헌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범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	김정웅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인경	〃
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태회	2026년도 기본법률총서(지연손해금) 연계 법관연수(2026. 10. 30.) 피교육을 명함
	〃	김대현	〃
	〃	김선아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종기	2026년도 기본법률총서(지연손해금) 연계 법관연수(2026. 10. 30.) 피교육을 명함
	〃	박해빈	〃
	〃	백승엽	〃
	〃	송영복	〃
	〃	조 인	〃
	〃	황승태	〃
	대전고등법원 판사	곽상호	〃
	〃	박진환	〃
	〃	이의석	〃
	〃	장정태	〃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구년	〃
	수원고등법원 판사	강선아	〃
	〃	강은주	〃
	특허법원 판사	우성엽	〃
라.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이슬	2026년도 기본법률총서(지연손해금) 연계 법관연수(2026. 10. 30.) 피교육을 명함
마. 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양철순	2026년도 기본법률총서(지연손해금) 연계 법관연수(2026. 10. 30.) 피교육을 명함
	광주고등법원 판사	하지인	〃
	광주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정우택	〃
	수원고등법원 판사	여동근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바.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혜윤	2026년도 기본법률총서(지연손해금) 연계 법관연수(2026. 10. 30.) 피교육을 명함
	〃	김리사	〃
	〃	김연수 (金衍守)	〃
	〃	김유성	〃
	〃	김지예	〃
	〃	김혜령	〃
	〃	김효정	〃
	〃	노민식	〃
	〃	박봄빛누리	〃
	〃	박소연	〃
	〃	송승환	〃
	〃	안현진	〃
	〃	윤이환	〃
	〃	이준승	〃
	〃	이현종	〃
	〃	이혜인	〃
	〃	임성현	〃
	〃	장호준	〃
	〃	정세영	〃
	〃	주문식	〃
	〃	진희원	〃
	〃	채영림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해마루	〃
	서울행정법원 판사	신연석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승현	〃
	〃	안희경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장윤성	2026년도 기본법률총서(지연손해금) 연계 법관연수(2026. 10. 30.) 피교육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희숙	〃
	〃	서영경	〃
	〃	신유정	〃
	〃	안홍준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백현민	〃
	〃	최지은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성하	〃
	〃	문지현	〃
	〃	유지영	〃
	〃	이보경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심현우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동균	〃
	〃	김동희	〃
	〃	성혜진	〃
	〃	여민승	〃
	〃	장태관	〃
	〃	정재경	〃
	〃	조현경	〃
	〃	최윤경	〃
	〃	하다희	〃
	인천가정법원 판사	김재호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노청수	〃
	〃	이효선	〃
	수원지방법원 판사	구현정	〃
	〃	김아영	〃
	〃	김현지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연운희	2026년도 기본법률총서(지연손해금) 연계 법관연수(2026. 10. 30.) 피교육을 명함
	〃	조유리	〃
	〃	최종헌	〃
	〃	한지숙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우재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한옥형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창용	〃
	〃	정주희	〃
	춘천지방법원 판사	박혜련	〃
	〃	이정준	〃
	〃	정혜원	〃
	대전지방법원 판사	오민관	〃
	대전회생법원 판사	정현기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판사	윤석범	〃
	청주지방법원 판사	김소연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박수진	〃
	〃	신유리	〃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혜림	〃
	〃	안성규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이은경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김수빈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안근홍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부성	2026년도 기본법률총서(지연손해금) 연계 법관연수(2026. 10. 30.) 피교육을 명함
	부산가정법원 판사	이현지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박재인	〃
	〃	박주영	〃
	창원지방법원 판사	고유정	〃
	〃	홍대훈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신나연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김 현	〃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서진	〃
	〃	김상이	〃
	〃	김화경	〃
	〃	김효명	〃
	〃	서민욱	〃
	〃	유주원	〃
	광주지방법원 판사 (광주가정법원 판사)	이지혜	〃
	광주지방법원 판사	장정연	〃
	〃	정지은	〃
	광주지방법원 판사 (광주가정법원 판사)	조성진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김현정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은영	〃
	〃	백도연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강민균	〃
	전주지방법원 판사	오서진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전주지방법원 판사	오현순	2026년도 기본법률총서(지연손해금) 연계 법관연수(2026. 10. 30.) 피교육을 명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원도연	〃
	제주지방법원 판사	김민지	〃
	〃	박건우	〃
	제주지방법원 판사	정가원	〃

인사발령 법 제172호 | 2026. 10. 29.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장			
	의정부지방법원장	황병헌	2026. 11. 3.부터 2026. 11. 6.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경력별 연수 VI) 피교육을 명함
	울산지방법원장	유진현	〃
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백강진	2026. 11. 3.부터 2026. 11. 6.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경력별 연수 VI) 피교육을 명함
	〃	이규홍	〃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제정	〃
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석문	2026. 11. 3.부터 2026. 11. 6.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경력별 연수 VI) 피교육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순호	〃
	〃	김한성	〃
	〃	문혜정	〃
	〃	임태혁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신종열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양희	〃
	〃	김영학	〃
	〃	김현석	〃
	〃	부상준	〃
	〃	신상렬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은성	2026. 11. 3.부터 2026. 11. 6.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경력별 연수 Ⅵ) 피교육을 명함
	〃	김행순	〃
	〃	김형훈	〃
	〃	박미리	〃
	〃	박상구	〃
	〃	심태규	〃
	〃	안동범	〃
	〃	이재석	〃
	〃	한정훈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송인권	〃
	〃	이근수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설민수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윤종섭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황기선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만호	〃
	〃	박치봉	〃
	〃	손현찬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윤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병훈	〃
	〃	김세윤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조미옥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라.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견종철	2026. 11. 3.부터 2026. 11. 6.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경력별 연수 VI) 피교육을 명함
	〃	김관용	〃
	〃	김상우	〃
	〃	김종기	〃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도서관장)	문주형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선준	〃
	〃	박순영	〃
	〃	손철우	〃
	〃	오현규	〃
	〃	왕정옥	〃
	〃	원익선	〃
	〃	이형근	〃
	〃	정재오	〃
	대전고등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진석	〃
	대구고등법원 판사	곽병수	〃
마.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건호	2026. 11. 3.부터 2026. 11. 6.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경력별 연수 VI) 피교육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안홍준	〃

인사발령 법 제173호 | 2026. 10. 3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나현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11. 6.부터 2027. 2. 21.까지 휴직을 명함



2026. 11. 15. **제1748호**
Supreme Court of Korea



ISSN 2951-2255